

판 결

사 건 [redacted] 임금

원 고 [redacted]

[redacted]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유

피 고 [redacted]

최후주소 [redacted]

변 론 종 결 [redacted]

판 결 선 고 [redacted]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20,4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[redacted]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, 10,248,440원 및 이에 대하여 [redacted]부터 [redacted]까지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